Mobility-as-a-Service (MaaS)

MaaS 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Jaehyun (Jason) So

Assistant Professor

Dept. of Transportation System ENG.

AJOU UNIVERSITY



TABLE OF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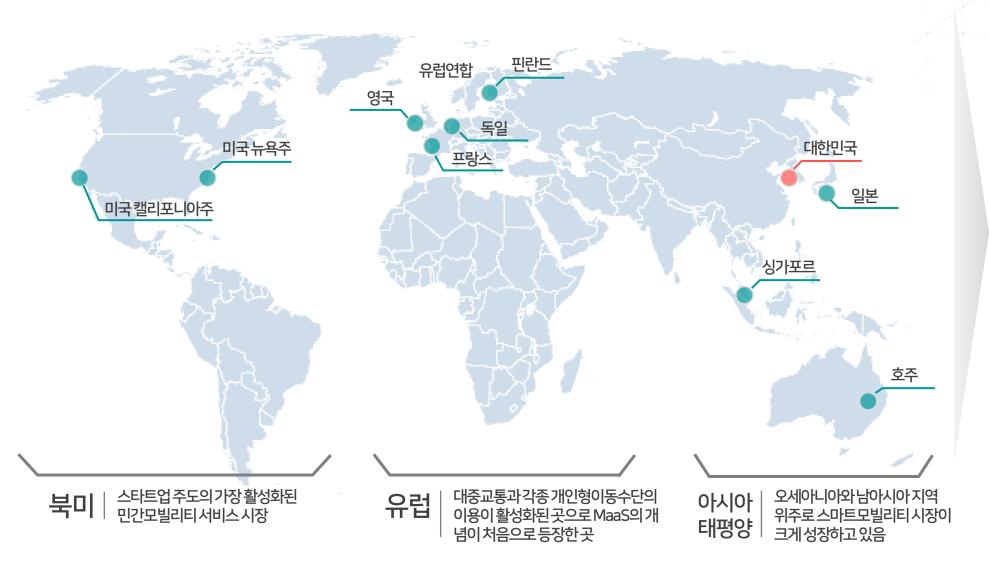
- 1) MaaS 산업 동향 조사 · 분석
 - MaaS의 정의 및 기술수준
 - 국내외 MaaS 서비스 사례
 - 국내 MaaS 관련 규제 동향
- 2) 국내외 MaaS 법제도 조사-분석
 - 국내(대한민국)
 -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 3) 국외 MaaS 산업 관련 법제 사례 요약
 - 해외국가별/법제분야별 법제 사례 조사분석 내용 요약

- 4) 국외 법제사례 분석 기반 국내 법제 개선 시사점 도출
 - MaaS 산업 활성화 측면 해외국가별 법제 시사점
 - MaaS 산업 활성화 측면 법제분야별 법제 시사점

조사분석 대상 국가 및 법제 분야

▶ 분석 대상 국가 및 법제 분야



MaaS 관련 정책방향(흐름)

MaaS 관련 규제흐름

법제도 | 여객운송(공공)

법제도 | 민간모빌리티

법제도 | 보조금 지원

법제도 | 서비스 이용자 권리

법제도 | 사고, 보험, 책임

법제도 | 신산업 지원, 활성화

법제도 | 규제샌드박스

법제도 | 반독점

법제도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 데이터 연계,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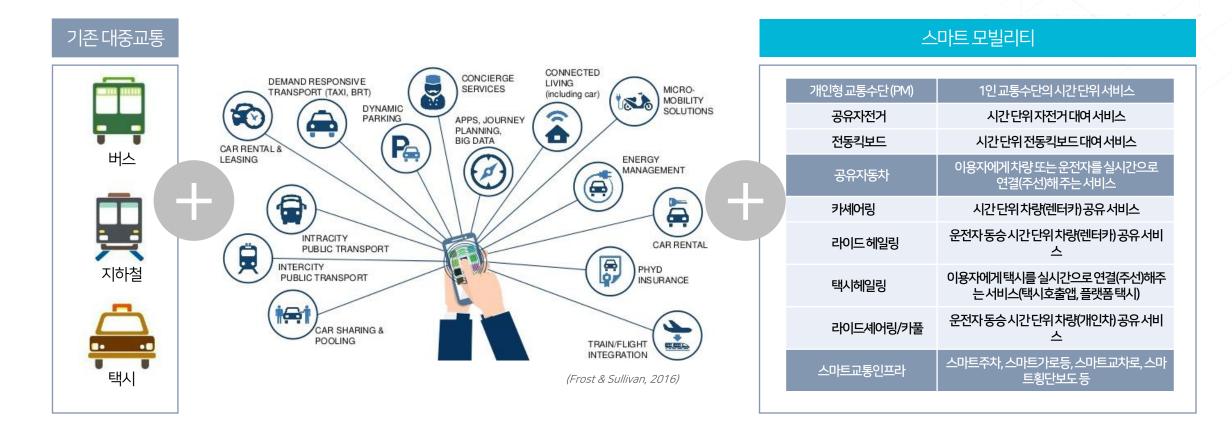
MaaS 산업 동향 조사·분석



MaaS의 정의 및 핵심 서비스

Mobility-as-a-Service (MaaS)

- 모든 교통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이동의 전 과정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
- 이용자 입장에서 하나의 앱을 통해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통합이동계획 수립, 차량 호출, 예약, 결제 가능



국내외 MaaS 서비스 수준

국내수준

핀란드 WHIM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Category		Base infrastructure	Individual digitalization	Partial integration	Fu ll integration	Personalized integration	Mobility integration
Definition		Supply of base infrastructure	Digitalization of individual transportation mode	Integr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modes	Integration of public and private transportation modes	Personalized user services based on users' preferences and experiences	Evolution of transportation and mobility services
Integration level of information and means		None	Individual mode	Public transportation modes	All(public and private) transportation modes	Al(public and private) transportation modes	All(public and private) transportation modes
Core technologies required		None	Database	Big Data, system integration	Big Data, system integration	Big Data, A.I.	Big Data, A.I., autonomous driving
Mobility operation		Fixed	Fixed	Fixed	Fixed	Flexible (demand-responsive)	Flexible (demand-responsive)
	Whom to plan travel	User	User	User	User	System	System
User perspec tive	Tasks to do	Everything from departure to destination	Searching individual transportation mode	Searching and booking using partially integrated mobility information	Searching and booking using fully integrated mobility information	Searching fully integrated mobility information, and booking based on preferable modes and route	Searching fully integrated mobility information, and booking based on preferable modes and route
Expected impact		Basis to deploy smart mobility	Travel time and costs decrease	Maximized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	Maximized efficiency of all(public and private) modes	Minimized travel time and costs, and maximized user satisfaction	Maximized social benefits including mobility operation efficiency, safety, and sustainability

- 국내에선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교통 수단에 대한 운영정보를 통합하여 제 공 중
- 통합대중교통정보는 지자체 센터 등을 통해 지자체 대중교통 관련 앱 또는 민간(카카오, 네이버 등) 교통정보서비스 앱 등을 통해 제공 중

Defining Smart Mobility Service Levels Via Text Mining (So et al., 2020)

국내외 MaaS 서비스 사례

▶ MaaS에 대한 활발한 시도, 하지만 모두 완벽하지 않음

(공공 주도)

유럽 MaaS 서비스 사례 biGo 핀란드헬싱키 스웨덴예테보리 freedom of mobility. moovel 독일다임러 Qixxit 독일도이치반 평창동계올림픽 Go평창

국내 MaaS 서비스 사례



'GO 평창' 앱이란?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

여러분에게 <mark>편리하고 안전한</mark> 신개념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요



국내 MaaS 서비스 사례 (민간 주도)

MOCEMO SUBSCRIPTION Sin entrada Gastos incluidos Cambio de coche cada 6 me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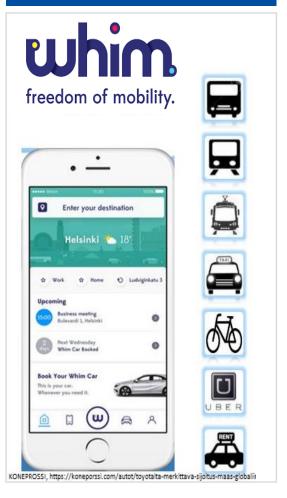
현대자동차

제주MaaS I 대구Ma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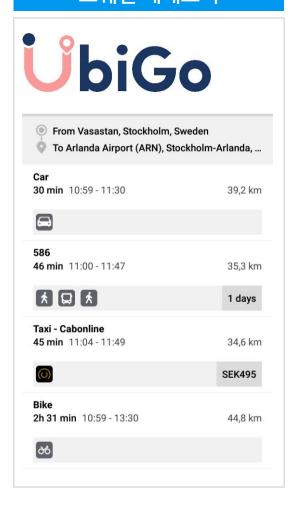


국외 MaaS 서비스 사례

핀란드 헬싱키



스웨덴 예테보리



독일 (도이치반)



독일 (다임러)



국내 지자체 MaaS 서비스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 MaaS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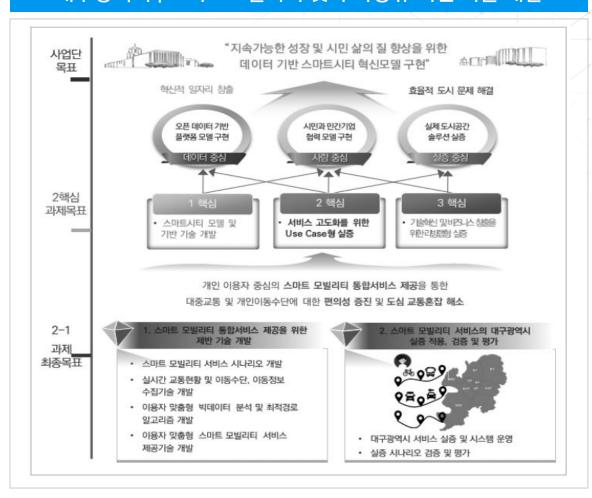
<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기간: '18.8.~'20.3./총 연구비: 32억 원(정부 19억 원, 민간 13억 원)

·연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주관), KT, 서울대, 홍익대, 에세텔, 이지식스 등



대구광역시 | 스마트모빌리티 및 주차공유 지원 기술 개발



제주 MaaS vs. 대구 MaaS

구분	제주 통합모빌리티(MaaS)	대구 통합모빌리티(MaaS)
통합결제/정산	 <u>블록체인 기반 통합 결제 및 정산</u> PG사와 플랫폼을 연동하여 별도의 가상화폐(토큰)를 충전/결제 선불교통카드 기능 없음 	 모든 교통수단 <u>하나의 앱에서 결제(선불교통카드</u> 탑재) 선불교통카드는 신용카드/계좌이체/카카오페이를 통한 충전/환불 정산사업자 가맹계약을 통해 대중교통 이외 수단에 대해 정산
교통수단	 <u>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미 연계</u> 자전거, DRT, 공유차 	 <u>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연계</u>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DRT, 공유차, 주차
통합사용자 인증방 식	 (본인인증) 지문 인증 기반으로 통합 사용자 인증 (이용인증) 자체 개발한 디바이스에 지문 또는 QR 태킹 인증 	 (본인인증) <u>통신사</u>를 통한 사용자 인증 (이용인증) <u>NFC 및 QR 태깅</u> 인증
교통수단 예약	• <u>자전거, DRT, 공유차 서비스 예약</u> 기능 제공	DRT, 공유차, 주차 서비스 예약 기능 있음 향후 킥보드, 전기자전거 예약 예정
통합 길찾기	• 다수단 연계 기반의 길찾기 제공	• 실시간 정보 기반의 다수단 연계 기반의 길찾기 제공
통합 플랫폼	• 교통수단 <u>통합 확인/결제/정산</u> 플랫폼	 <u>통합 길찾기</u> 제공 <u>통합 결제/정산</u> 기능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시간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국내 민간기업 MaaS 서비스 사례

카카오 모빌리티

네비게이션, 스마트주차, 택시 호출, 자전거 대여, 셔틀, 시외버스, 기차 까지 업계에서 가장 연결성 높은 서비스 포트폴리오 구성 최근 세차, 정비, 중고차까지 서비스 영역 확대 중



SK텔레콤 | 티맵모빌리티

SK텔레콤 자회사 티맵모빌리티가 세계 최 대 승차공유업체 우버(Uber)와 합작, '우티 (UT)' 출범

티맵, 티맵택시+우버택시, 렌터카, 대리운전, 차 량공유, 주차, 라스트마일 서비스 런칭 예정



현대자동차 | 모션스크립션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MaaS 브랜드로서 '모션 스크립션'를 2021년 스페인, 프랑스 에서 서비스 런칭

현대차 차량을 6~24개월 일정금액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이용자는 주유비만 부담



국내 지자체 정책연구 분석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통합이동서비스 도입 전략과 정책 연구를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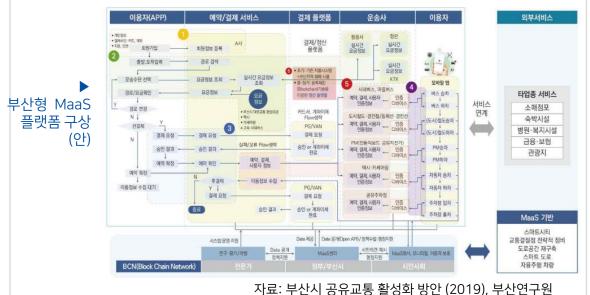
서울시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도입방안 | 서울연구원, 2019

- 단기적으로 연결성 강화와 공유에 따른 통합이동서비스가 실현됨: i) 기존 교통시스템에 O2O(Online to Offiline) 공유 기반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 ii) 이용자에게 대중교통까지 접근수단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
- 장기적으로 Autonomous-통합이동서비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Door-to-Door 서비스의 보편화가 예상됨
- 통합이동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참여자들과 수단 별 운영사, 지자체 등 사회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와 기준이 마련 돼야 함



부산시 공유교통 활성화 방안 | 부산연구원, 2019

- 통합이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1) 효과적인 교통수단간 연계를 위한 통합이동서비스 인프라의 구축, 2)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시스템 마련, 3) 통합이동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의 순위로 조사되었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부산시 통합이동서비스 운영주체는 '부산시+민간' 형태의 SPC가 적당하며, 효과적인 교통수단 연계를 위한 통합이동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임



국내 MaaS 관련 주요 사건 정리

▶ MaaS/스마트모빌리티의 도입과 법제도적 충돌 사례

구분	시기	내용
차량공유 서비스출현	2011년 2013년 7월 2014년 7월	카셰어링서비스그린카출시 우버의한국출시 국토부와서울시에서 우버운행불법영업규정으로 퇴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자가용승용차유상운송 행위로 간주)
모바일 앱 기반 택시호출 시장 출현	2015년 4월 2015년 12월	카카오택시, SK플래닛T맵택시출시 콜버스출시(전세버스공동임대플랫폼)
카풀 중심의 차량 공유 서비스 확산	2016년 4월 2016년 5월 ~9월 2017년 10월 2017년 11월 2019년 1월	박시렌터카승합차출시 풀러스(poolus), 럭시, 우버쉐어출시 차차크리에이션공유서비스도입(렌터카와대리기사동 시호출) 서울시, 경찰에 풀러스 수사요청 카카오모빌리티카풀시범서비스중단
택시업계와의 갈등 및 조정	2017년 12월 2018년 7월 2018년 10월 2018년 12월 2019년 1월 2019년 3월 2020년 4월 2021년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주관해커톤개최(택시업계불참) 차차위법(국토부) 택시4개단체카풀반대광화문시위 택시기사카풀반대주장하며분신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출범 사회적대타협기구활동 종료(시간-횟수제한카풀협의) 타다베이직서비스중단(2020년 3월, 타다금지법통과) 헌법재판소'타다금지법' 합헌결정

- Uber와 타다 등 라이드쉐어링 서비스 등장 후 기존 산업(택시, 버스 등)과의 갈등
-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라이드쉐어링 서비스 사실상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020년)

개정일시	관련조항	내용
개정전	제 34조 (유상운송의금지등) 제2항누구든지자동차대여사업자의사업용 자동차를임차한자에게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외국인이나장애인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운전자를알선할수있다.	제 18조(운전자알선허용범위) 법제34조제2항단서에서 "외국인이나장애인 등대통령 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 각호의경우를 말한다. 1.자동차대여사업자가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동차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바. 승차정원 11인승이상 15인승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사람
개정후	제 34조 (유상운송의금지등) 제2항누구든지자동차대여사업자의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u>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u>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2021년 10월 8일 시형	











서비스중단

인수합병

무상운영

세비스중단

서비스중단

국내외 MaaS 산업 관련 법제도 조사 · 분석

국내(대한민국) ◀ MaaS 관련 규제 동향 및 법제도 현황

규제 동향 법제도 현황

- 중앙정부 주도하에 MaaS 관련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 운송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택시운 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 갈등 심각
-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 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u>여객자동차</u> 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u>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 들을 규정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라이드쉐어링 서비스 금지)
- '<u>한국형 규제 샌드박스</u>'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를 도입하여 지역발전전략의 다극화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 · 발전
- 교통관련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생성 및 수집하고 데이터 개방화

법제분야구분	내용	관련법제도
여객 운송 (공공)	 여객운송사업은 크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예: 택시운송사업),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됨 국토부장관또는 시도지사가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신고해야함 5년마다 택시의 적정공급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산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민간모빌리티	 플랫폼운송사업자는수송수요와택시총량을 고려한수송력 공급에 적합하고,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최저 허가기준대수, 차고지등 운송시설, 보험가업등 기준에 적합해야함 국토부 장관은 택시감차의 실적추이, 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의총 허가 대수를 관리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시업법
보조금지원	 수익성없는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용자 광역알뜰교통카드와같은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국토부장관에서 납부. 이는 택시감차, 택수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고, 보험,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을위한보험에의가입의무조항. 민간모빌리티사에 대한의무규정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비자권리,보호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함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할수 없으며, 여객을 합승하도록 할 수 없음(다만, 운송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승인후실증특례만료시(2+2년)까지관련 법령이 정비되지않을시,실증특례 기간만료전사업자의법령정비요청제도입,법령정비의필요성판단구체화,안전성등이 입증되어법령정비에착수한경우에는임시허가 신기술및신산업의경우가입가능한책임보험상품이없거나보험료산정이어려운점이 있기에공제등에도가입할수있도록하고,특구계획변경절차를 간소화 	

국내(대한민국) ◀ MaaS 관련 규제 동향 및 법제도 현황

신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법제도 개선, 법적 지원체계 마련

- ▶ 신 모빌리티 서비스의 개념, 범위, 대상 등 법적 근거 마련
 -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
- ▶ 기존 산업의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육성의 조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새로운 산업으로 부터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징수하여 택시감차, 택수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 사용
- ▶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지역발전 전략의 다극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 · 발전

신모빌리티서비스의 반독점 이슈, 소비자/근로자의 기본권리 보장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 미비

- 거대 플랫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이슈가 존재하나, 이를 제지할 법적 규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질 저하와 더불어 플랫폼 여객운
 송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 환경 등 보장이 점차 어려움

BUT

통합이동서비스의 개념, 범위, 대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통합이동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관련 법에서 통합이동서비스를 명확히 언급하고 통합이동서비스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통합이동서비스의 비즈니스 기반 조성, 데이터 통합·공개 등을 위한 표준화 등 지원방안 미비

- 공공데이터 포털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상점 (One-stop shop)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음
- ·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 운송사업자로부터 생성되는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부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표준화 및 개방화 필요

유럽연합 ◀ MaaS 관련 규제 동향 및 법제도 현황

규제 동향

MaaS Alliance

- 민간협력사업 단체 'MaaS Alliance' 설립
 - 유럽을 중심으로 MaaS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구현과 정책입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유럽 각국의 교통부문 공공-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조직함

▶ 우버 관련 규제

-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를 '운송 서비스'로 평가 하고 '운수업체' 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 개별 회원국들의 우버 팝 등에 서비스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는 정당하다는 판단
 - 정보 서비스가 아닌 운송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이 아닌 운수업체로 판결한 것

법제분야구분	내용	관련 법제
소비자 권리, 보호	 버스이용시승객이 갖는 권리에 대한 법률 존재 승객 간의 차별 금지, 취소 또는 지연시 승객의 권리, 승객에게 제공해야하는 최소한의 정보 등의 내용 제시 	• Regulation 181/2011
반독점	• <u>반경쟁적행위규제</u> 관련법률존재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139/2004
개인정보보호	• 기본권과자유를 보호하고 EU 역내에서 개인정보의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률 존재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데이터 연계, 공유	 공식개방형표준을준수한데이터개방관련법률존재 실시간교통데이터제공의무및접근성에대한법률존재 도로안전데이터수집및제공(공유)의의무화에대한법률존재 대중교통데이터표준으로 NetTex(Network Taletable Exchange)와 SIRI를사용함 	 Directive (EU) 2019/1024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5/96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886/2013

법제도 현황

영국 ◀ MaaS 관련 규제 동향 및 법제도 현황

규제 동향 법제도 현황

MaaS 서비스 활성화

- 'MaaS 런던'서비스 제공
- 패키지 선택, 여행 계획, 예약, 탑승, 비용 지불의 총 5단계로 구성된 통합 모바일 패키지 서비스 제공
- 런던의 대중교통은 물론 민간 교통 서비스를 포함함
- 수요 대응형 버스 서비스 확대
- Tees Flex 버스, ViaVan의 수요 대응형 버스 서비스 시행
- 웨일스 교통(TfW)의 수요 대응형 버스 서비스 추진

▶ 우버 관련 규제

- 2020년 9월 <u>우버 신규 면허 발급 허가</u>
- 새 영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8개월로 규정한 바 있음
- 대법원은 우버 운전자를 근로자로 분류
- 우버 운전자가 로그인부터 로그아웃 할 때까지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결

1		2 :: 25	
	법제분야구분	내용	관련 법제
	여객 운송 (공공)	 버스서비스관련법률존재 여객운송사업에관련하여지역별로노선입찰제또는등록제시행 비수익노선(일반버스운행)중비효율이발생하는경우미니버스,자유승하차버스,수요대응버스등특수운행형태도입 택시관련규제는다른나라에비해완화된편 	Bus Services Act 2017Transport Act 1985Transport Act 2000
	민간모빌리티	 임대자동차규정을 준용하여 일부지역에서만 TNC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TNC 영업 허용 요건 제시함 라이드셰어링서비스 안전관리 법안 제시 	 Private Hire Vehides (London) Act 1998
	보조금지원	• 비수익노선중 노선유지가필요한경우 보조금을 전제로 민간사업자에게 운행을 위임하여 일반적인 운행 형태로 운영함 (입찰 의무화)	
	사고, 보험, 책임	 유상운송면책 법률 존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자가 비영리 목적의 카셰어링에 참여하는 경우 보험 보상이 제공됨(일정 요건 만족시) 	Road Traffic Act 1988
	소비자권리, 보호	• Regulation (EU) No 181/2011에 대한기본내용유지 및추가수정	 The Rights of Passengers in Bus and Coach Transport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19
	반독점	반경쟁적행위규제관련법률존재경쟁시장청을창설하여시장조사기능을강화함	 Competition Act 1998 Enterprise Act 2002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개인정보보호	 GDPR에 기반한 정보보호법 존재 프라이버스 전자 통신 규정 존재 	Data Protection Act 2018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3
	데이터 연계, 공유	 정보공개를 원칙을 하며 개인 또는 기업이 공공기관보유 정보에 접근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 다양한 공공데이터 정책을 통해 공공데이터 공개 및 재이용을 적극 지원함 교통관련데이터 전면 AP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교통 수단 요금, 운행 시간, 예상 도착시간, 예정 공사 등) 	Freedom of Information Act

프랑스 ◀ MaaS 관련 규제 동향 및 법제도 현황

규제 동향 법제도 현황

▶ VCT 서비스 규제 동향

- VTC 운전기사와 택시 산업 간의 갈등완화를
 위해 '<u>떼쁘누 법</u>' 도입
- 거리별 요금 청구 금지, 승객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근처 이용 가능한 차량 정보 전달, 운행 서비스 종료마다 등록 차고지로의 복귀 의무
- VCT 서비스 규제를 완화함
- 이동시간에 기반을 둔 요율체계 허가
- 스마트폰을 통한 VTC 탐지 허용

▶ 우버 관련 규제

- 우버 팝 서비스 금지
- 운전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어떠한 사전심의 및 등록절차 없이, 우버 플랫폼 등록만으로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버 서비스와 구별됨
- 대법원은 우버 운전자를 직원(종업원)으로 판결
- 우버운전기사들이독자적인고객을 갖거나,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만큼 회사측에 종속된 관계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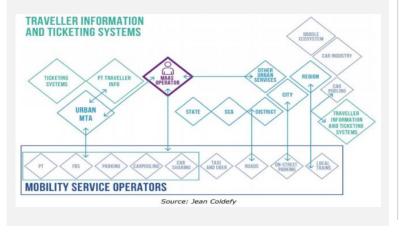
법제 분야구분	내용	관련 법제
여객운송(공공)	• 공공서비스위임,자가운영방식두가지로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함	
민간모빌리티	 VCT서비스를시행하며 VCT규제사항관련법률존재 공유서비스운영시준수사항관련법률존재 플랫폼노동종사자(운전자)약관법률존재 	 Direction Générale des Infrastructures, des transports et de la mer THE GRANDGUILLAUME LAW LOI no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사고,보험,책임	• 플랫폼운송의종사자(운전자)의보험료부담관련법률존재	 LOI no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소비자권리, 보호	교통장애발생시모든 승객이 관련 정보에 대해제공 받을 권리제시티켓의 유효기간 연장, 교환 또는 환불 관련 법률 존재	 LOI no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반독점	반경쟁적행위규제관련법률존재대체적으로EU기능조약의경쟁법과유사	Code de commerce
개인정보보호	 자국내모든개인정보처리(공공및민간부문)의공정성,투명성,적정성을 확보하도록규정함 대부분조항은기본적으로GDPR에근거함 	 Loi n °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a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es
데이터 연계, 공유	 공익데이터를개방할의무를 법적으로규정하였으며공익데이터의개념을 채택하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개를 확대함 교통데이터 접근 및 재사용, 교통 데이터 제공 관련 법률 존재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1) LOI no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독일 ◀ MaaS 관련 규제 동향 및 법제도 현황

규제 동향 법제도 현황

MaaS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노력

- 2021년 3월 여객운송법 개정안을 통과
 - <u>현행법상카풀서비스는예외적으로허가를받거나최장</u> 4년으로제한
 - 개정을 통해 새로운 운송 수단인 'bundled ondemand transport'를 만들어 별도의 법적 프레임워크 생성
- Mobil Flat
- 민간교통과 대중교통을 결합하려는 슈타트웨케 아우크 스부루크는 독일 최초의 모빌리티 플랫 요금인 모빌플랫 을 통해 고객이 복합교통 옵션 이용 가능



법제분야구분	내용	관련 법제도
여객 운송 (공공)	 <u>새로운여객운송법시행</u>에의해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일반면허증 외에 추가승객운송 차량 면허증 필요 렌터카의 반납위치를 회사 본사가 아닌 다른 위치로 지정 가능 	• 여객운송법(PBefG)
민간모빌리티	 여객운송법은대중교통제공자와면허택시운영자로구분되지만교통 네트워크제공자의승차권서비스는제도에속하지않아여러단점존재 카셰어링법을통해차량공유서비스이용자에게단순화와혜택제공 	 여객운송법(PBefG) 자동차공유법(Carsaringgesetz)
보조금지원	• 교차보조금과지역매칭펀드를통해대중교통의손실을부분적으로보상	• 연방시교통금융법(GFVG)
소비자권리, 보호	 소비자보호 법률을 개선하여 제재를 강화 금지법과 불공정 경쟁법도 경고 및 법적 조치 옵션을 제공 	• 소비자보호규칙
신산업활성화	• IPEC출시에적극적으로참여및자금조달	
규제샌드박스	• 많은모빌리티관련사업에규제샌드박스제도활용	
반독점	 경쟁법은 불공정 경쟁법과 반독점법으로 구분 독일의 경쟁법과 유럽의 경쟁법은 조화를 이루고 있음 	• 경쟁제한법(GWB)
개인정보보호	• <u>연방데이터 보호법</u> 을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	• 연방데이터보호법(BDSG)

핀란드 ◀ MaaS 관련 규제 동향 및 법제도 현황

규제 동향 법제도 현황

- MaaS 서비스 최초 상용화
- 교통 서비스법을 통해 MaaS 서비스를 포함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촉진
 - 데이터개방성분야에서법률제정진행
 - 모빌리티 운영자가 표준 API에 자유로운 접근 가능
 - 도심 외 지역에서도 MaaS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자금 으로 MaaS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중
- MaaS 관련 Whim Application 개발
 - MaaS 개발 시범사업 추진으로 스타트업 다수 참가
 - 오픈 인터페이스 제작을 위한 교통수단의 노선, 금액, 일정 등의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제



법제분야구분	내용	관련 법제도
여객 운송 (공공)	 여객및화물운송에대한특별법인교통서비스법「Act on transport」제정 - 도로운송관련조항 집결,도로기반시스템기준설립 택시규제완화및면허취득에대한법안개정 	 「Act on transport」 Part I General Provisions Part II Transport Market
민간모빌리티	 택시운수법개정으로 택시차량수제한해제 및 최소택시요금철폐 >> MaaS 관련 어플 활성화 진행 >> 택시 업체 간의 경쟁 촉진 교통공유서비스와택시 예약 어플 간의 연계로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FAct on transport_ Part II Section 2 Taxi Services
보조금지원	• 교통서비스개발에대한목적으로 <mark>대중교통서비스관련예산보조금지원</mark>	EU Regulation
소비자권리, 보호	 운송서비스제공자는소비자에게서비스면허,주요운행지역등의정보를 전자형식으로제공하는의무존재 핀란드교통안전국과소비자보호법을통해승객 및소비자권리감독 	 「Act on transport」 Part III Service
신산업활성화	• MaaS 관련 신산업활성화 지원 관련 법률 존재, Whim 등의 결과물 홍보	
규제샌드박스	• 다양한교통수단이용가능한 <u>단일승치권</u> 을운송서비스제공업체가판매 가능하도록규제완화	 「Act on transport」 Part III Service
반독점	• 교통서비스법「Act on transport」에계약수주절차및독점권부여명시	• 「Act on transport」
개인정보보호	• 핀란드교통통신부는 My Data 개념을 정리한 백서 발간	
데이터 연계, 공유	• 개방형인터페이스를통해교통흐름및이동정보무료제공의무존재	• 「Act on transport」

미국 ◀ MaaS 관련 규제 동향 및 법제도 현황

규제 동향 법제도 현황

▶ 뉴욕

- Yellow cab 등록 기준 및 규제 완화
 - 차량 등록 기준, 의무 주행 시간 등의 규정 완화
- 라이드셰어링 면허 총량제 시행
 - 라이드셰어링업체의 신규 면허발급 한시조례 무기 연장
- 법원은 우버 운전자를 '자영업자'로 판결

캘리포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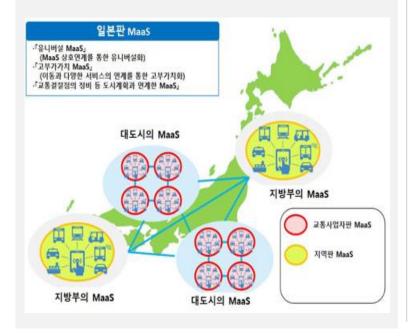
- CPCU의 '운송서비스네트워크회사(TNC)' 정의
 - 운송네트워크회사를 합법화 할 수 있는 체계 도입
- 법원은 승차 공유 서비스업체 운전기사를 개인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할 것을 판결했으 나 주민투표로 인해 개인사업자로 유지
- ▶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의 활동
- Uber와 Lyft는 MaaS 로의 피봇팅을 실행 중
 - 기존 차량 호출 서비스를 넘어 카풀, 자전거/스쿠터 공유,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옵션을 추가함

법제 분야구분	내용	관련 법제
여객 운송 (공공)	 일반운송사업(승객)의합리적서비스제공관련법률존재(뉴욕) 여객운송사업의운송자격및요금산정관련법률존재(뉴욕) 표준적택시규제시스템인QQE control도입 TNC등장에따른피해로<u>택시의등록기준및규제완화</u> 	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CHAPTER 61-A
민간모빌리티	• TNC에대한안전,책임의무,비용규정에따른TNC영업허용	The TNC Regulatory Landscape
사고, 보험, 책임	 버스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 적용 법률 존재 (뉴욕) 라이드셰어링 운행 단계별 TNC 보험 적용 법률 존재 P2P형태 카셰어링 사고 시 책임 소재 관련 법률 존재 	 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CHAPTER 28 Insurance California Assembly Bill No. 2293 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CHAPTER 71 Vehide&Traffic Nevada Assembly Bill No. 176
소비자권리,보호	 대중교통 승객이 갖는 권리 및 서비스 관련 법률 존재 (뉴욕) 버스 승객의 최소 보장수준 서비스 관련 법률 존재 (뉴저지) Yellow Taxi 승객 및 AAR 승객에 대한 권리 제시 	 NEW YORK STATE ASSEMBLY A06663 1266-j ASSEMBLY No.5024 STATE OF NEW JERSEY 219th LEGISLATURE §3
신산업활성화	 MOD Sandbox Program, IMI 시범 프로젝트실행 대중교통 혁신법을 근거로 신산업에 예산을 지원함 	• 49 U.S.C Section 5312 (대중교통 혁신법)
반독점	• 반경쟁적행위규제관련법률 3가지존재	Sherman Antitrust Act, Clayton ActFederal Trade Commission Act
개인정보보호	•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사항 법률 존재 (캘리포니아)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데이터 연계, 공유	 공공데이터에관한접근성과이용성,제공기준 및 목적 등을 규정한 법률존재 대중교통정보표준규격으로 GTFS 사용 	• Local Law 11 of 2012 section 2 chapter 5

일본 ◀ MaaS 관련 규제 동향 및 법제도 현황

규제 동향 법제도 현황

- ▶ MaaS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연계 지원
- MaaS와 교통사업자 간의 데이터연계 추진
 - 오픈 데이터의 범위, 형식 등을 정리하여 <u>MaaS데이터</u> 제공가능한플랫폼실현
 - 교통사업자의 피드백 제도, 타 산업과 연계기능 설계
 - 교통사업자, MaaS 사업자 간의 데이터 공유용 API 표준화



법제분야 구분	내용	관련 법제도
여객 운송 (공공)	 버스,택시,트럭등이여객및화물을 동시수송가능하도록규제완화 여객운수사업법을 통해 대중교통,수요대응형지원방안에대해규정 Google Map을 통한 공공교통의 정적 및 동적 데이터 표시되도록제공 	• 도로운송법 • 여객운수시업
민간모빌리티	 공공교통사업자대상으로 MaaS사업추진진행 MaaS사업활성화를위한 <u>AI 온디맨드교통(최적운행경로검색등)</u> 도입비용지원 	• 도로운송법
보조금지원	• 민간모빌리티서비스이용시 Cashless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	• MaaS보급을위한기반정비사업
사고,보험,책임	• 손해보험회사'미츠이스미토모해상','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은 MaaS보험을제공하며서비스이용시사고책임과보험등에대해규정	
소비자권리, 보호	• 택시사전확정운임서비스를통해 외국인등이 안전한택시 이용가능	• 국토교통성서비스허가
규제샌드박스	• 「교통사업자협력형자가용유상여객운송제도」창설하여합의형성및신청 절차간소화하는특례조치실시	• 교통사업자협력형 자가용유상여객운송제도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존재	•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데이터 연계, 공유	 MaaS데이터 연계가이드라인이 존재하여데이터 연계 방향성, 구조제시 버스데이터 오픈시 지원방안 관련 법률 존재 	• MaaS데이터연계 가이드라인

호주 ◀ MaaS 관련 규제 동향 및 법제도 현황

규제 동향 법제도 현황

-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조화로운 성장 추진
- 지점 간 운송 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호주 NSW 정부는 2015년 12월 18일에 수요 중심의 운송 산업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여 2017년 11월 1일에 택시, 렌터카 및 승차 공유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제시
 - 2016년 지점간 운송(택시 및 차량 대여)법이 2016년 6
 월 22일 NSW 의회에서 통과
 - NSW 교통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지점간 운송(택시 및 차량 대여) 규정 2017 완성
-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조화를 위해 지점간 운송 산업 조정 지원 패키지(Taxi Compensation Package) 제공
- 최근 수요응답형 운송플랫폼 시장, 운전자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검토 및 법제도 검토방안 등 제시 (on-demand platform work in Australia, 2021)
- 여러 도시에서 MaaS 시범사업 활발히 진행 중

	_ : :	
법제 <i>분</i> 야구분	내용	관련법제도
여객 운송 (공공)	 버스 안전(Bus services—safety management systems)에 대한 조항 이 별도로 있음 버스가택시처럼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별도로 있음 	Passenger Transport Act
민간모빌리티	 Point to Point Transport (Taxis and Hire Vehicle) Act 2016와 Point to Point Transport (Taxis and Hire Vehicle) Regulation 2017을 제정하여 민간모빌리티에 대한 면허자격, 안전기준, 요금 등에 대한 조항 개설 	 Point to Point Transport (Taxis and Hire Vehide) Act 2016 Point to Point Transport (Taxis and Hire Vehide) Regulation 2017
보조금지원	 보조금지원정책(Taxi compensation package)이 존재하여 ride share, hire cars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기존 택시 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됨 택시교통보조금제도(Taxi Transport Subsidy Scheme)가존재하여 교통약자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보조금 지급 	
사고,보험,책임	 서비스를제공하는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요구조건 존재 (제3자 재산 피해에 대한책임 \$5,000,000 커버리지 이상의 1개 이상 보험 가입 필수) 보험금청구가운전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 지불해야 할 초과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운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계약 또는 기타 약정을 운전자와 체결가능. 	Point to Point Transport(Taxis and Hire Vehicles) Regulation 2017
소비자권리, 보호	• <u>P2P서비스이용자에게요구하는운임은운임명령에따라명시된최대</u> 운임을초과할수없음	
규제샌드박스	•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존재하여 핀테크 분야 등에서는 적용	
반독점	• 소관부처(Trasnport and Roads, Regional Transport and Roads) 장관 이 서비스에 대한 적정 최대 요금을 제시하여 민간운송서비스에 대한 반독점 견제	 P2P Transport Act 2016 Independent Pricing Regulatory Tribunal Act 1992 No 39
데이터 연계, 공유	 공공부분에서의데이터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존재 Transport Data Exchange (TDX) program 을 통해 대중교통 및 실시간 교통데이터 공유(Open data – AP) 	Data Sharing (Government Sector) Act 2015

싱가포르 ◀ MaaS 관련 규제 동향 및 법제도 현황

규제 동향

MaaS/스마트모빌리티 시범사업 적극 추진

- MaaS, 수요응답형 서비스, 데이터 공유, 비접촉 결제기술 등에 대한 시범사업, 법제도 개선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19년 8월에 Point-to-Point(P2P) 여객 운송 산업법이 통과됨에 따라 P2P 운영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스트리트 헤일, 라이드 헤일 또는 카풀 서 비스)에 따라 별도의 라이선스 부여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 과 대중교통위원회(Public Transport Council, PTC)는 P2P 통근자와 운전 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P2P 부문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 로 국경을 넘어가는 여객운송산업에 대해서도 규 제 (예: Grab 등 요금을 받는 유료 카 쉐어링 서비 스 허가하지 않음)

번제	도현	황
		٠.

법제분야구분	내용	관련법제도
여객 운송 (공공)	• Public Transport Council Act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대중교통(공공, 민간) 요금 등을 규제 관리 함	Bus Services Industry Act 2015Rapid Transit System Act
민간모빌리티	 민간모빌리티(street hail/ride hail services)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서비스 자격(면 허 포함), 비즈니스 운영 요구사항등을 명시하고 있음 결과적 관련법이 수정되었으며, 제2차 택시예약서비스제공자법 2015는 폐지됨 	 Point-to-Point (P2P)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보조금지원	 '대중교통위원회법상에 대중교통기금 관련된 조항이 있으며 "버스"서비스와"기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지원이 됨 	
사고, 보험, 책임	• stree-hail/Ride-hail서비스면허를제공할때,면허소지자의보험요건에관한사항을 검토하는조항이들어가 있음	 P2P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소비자권리,보호	• <u>P2P서비스이용자에게요금을미리제공해야하며, 운임회피및과대청구범죄에</u> 대해계속규제	
규제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제도가존재하여핀테크분야등에서는적용	
반독점	• Ride-hail서비스요금체계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며, P2P면허소지자는 운전자와 의 파트너십계약이 본질적으로 비독점적인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면허 조건을 준수하도록 P2P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명시하고 있음	P2PPAX Transport industry act
데이터 연계, 공유	 개인데이터보호위원회가존재하며,정보통신미디어개발당국은데이터공유를위한데이터라이센스템플릿을제작하였음 Land Transport DataMall을 통해정적 및 동적개방형 전송데이터가공유됨 Open Data Portal은 교통을 포함한 9개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수집 중이며, 택시, 버스정보등 API로 민간회사들도 접근 가능하게함 	• 개방형데이터및분석 이니셔티브

기타 참고사례 (유럽연합 Horizon2020 지원 'MaaS4EU')

▶ 국내외 주요 국가 대중교통/교통서비스 관련 법제 현황 (MaaS4EU - 영국 맨체스터, 헝가리 부다페스트, 룩셈부르크)





Project Acronym: Grant Agreement number: Project Full Title:

t Coordinator:

23176 (H2020-MG 6.1 - 2016) nd-to-end Approach for Mobility-as-a-Service tools, usiness models, enabling framework and evidence for uropean seamless mobility

법제 현황

Transport Act 2000

- 114-Quality partnership schemes :지역대중교통관리기관(authority)은 업체고유의경영전략을 훼손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업체 들고의 협력을 통해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may).
- 135 Joint and through ticketing schemes :지역대중교통 관리기관(authority)은 시관할지역의전체또는 부분(combined)에서의 다수단 환승간통합요금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may).
- 139 Information about bus services : 지역 대중교통 관리기관(authority)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정보(the required information)를 적절한 방법(the appropriate way)을 통해제공해야한다(must).
- 141 Bus Information-supplementary:지역대중교통관리기관(authority)은지역과계층간치별없이동등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Bus Services Act 2017

• 시대중교통관리주체의시내대중교통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의지역업체간파트나쉽체계(MaaS등)조정권한명시

시사점 (혹은제한점)

- MaaS 연합체는 반독점법(anti-competition law)에 제한될 가능성
 - * 영국의 반독점법은 도시 내 독점적 지위의 업체(군)가 price fixing, bid rigging, sharing markets or customers, sharing commercially sensitive info. 등을 행할 경우 반독점 행위로 규정
- 맨체스터시의 대중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양하며, 이들의 통합을 주도할 법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없음
 - 또한, 각 업체별(버스업체, 철도운영기관, 기타 민간 서비스 업체) BM이 달라 통합에 어려움



Greater

Manchester

Budapest

Act XLI of 2012 on Passenger Transport

- Act CLXXXIII of 2005 on Railway Transport
- Government Decree 213/2012 (VII. 30) (Bus Decree): 버스서비스에 대한최소요구사항 및 버스업체 경영관련의무명시
- Government Decree 195/2016. (VII. 13) (Railway Decree): 철도서비스에대한최소요구사항및운영업체경영관련의무명시
- Act CLV of 1997 on Consumer Protection : 공공서비스(대중교통) 대상의소비자(대중교통 이용자) 권리명시

- 유럽연합(EU)와 헝가리 부다페스트시의 대중교통 분야 법제 규정 상이
 - 유럽 내 민간업체들과 헝가리 내 대중교통 운영업체들간 통합 어려움
 - 공유서비스 측면에서, 헝가리 내 대중교통 운영업체들은 Consumer Protection Act를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국제적 민간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이 법제의 준수의무 없음 (>> 지역간, 연령간, 계층간 서비스 차별 및 통합 어려움)

EU regulation on passenger rights 1371/2007

- Article 9: Availability of tickets, through tickets and reservation
- Article 11: Liability for passengers and luggage
- Article 12: Insurance
- Article 19: Right to transport
- Article 20(1): Information to disabled persons and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 Article 22(1): Assistance at railway stations
- Article 26: Personal security of passengers

- 룩셈부르크의 지역별 EU regulations의 적용범위 상이
 - 1) Grand Duchy of Luxembourg, 2) the Luxembourg and the Greater Regions, and 3) outside the greater regions
 - 지역별 대중교통 운영 관련 법제 규제 범위 상이
- Verkeiersverbond Luxembourg (룩셈부르크대중교통책임기관)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 민간서비스와의 통합 어려움)



기타 참고사례 (유럽연합 Horizon2020 지원 'MaaS4EU')

▶ 국내외 주요 국가 대중교통/교통서비스 관련 법제 현황 (MaaS4EU - 영국 맨체스터, 헝가리 부다페스트, 룩셈부르크)





Project Acronym: Grant Agreement numbe Project Full Title:

ect Coordinator:

723.176 (H2020-MG 6.1 - 2016) End-to-end Approach for Mobility-as-a-Service tools, business models, enabling framework and evidence for European seamless mo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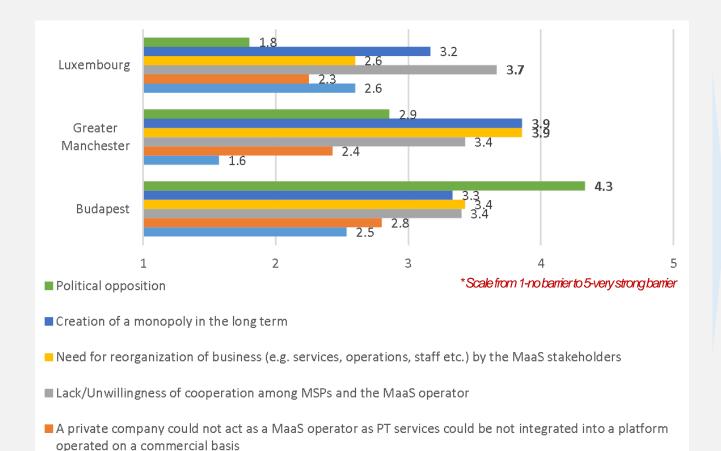


Figure 1: Existing Institutional/Legal/Regulatory barriers/risks for the implementation of MaaS

- 다른 특성을 가진 주체간 (공공과 민간, 대중교통과 공유교통 등)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한 명시 필요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최소 요구조건, 소비자(이용자) 권리 보호 관련
- MaaS서비스제공 주체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법제도 미비
 - MaaS서비스 제공주체에 대한 정의, 의무, 서비스 요구사항 등
- MaaS 연합체의 반독점행위 규제에 대한 법제도 제정 필요.
 - 9(1) Price fixing, bid rigging, sharing markets or customers, sharing commercially sensitive info
- MaaS서비스제공주체에 대한보조금이슈
 - 기존 대중교통 업체에는 보조금 지급, 민간 업체에는 보조금 지급 근거 없어 불가능
 - 다만, 보조금 정책은 민간의 효율성 저하 우려
- 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복지 측면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 필요



국가	분류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정책방향	 모빌리티부문신생기업(Uber, Lyft)을 통한 MaaS 산업활성화 중앙정부 예산 투입을 통한신산업활성화 	사고, 보험, 책임	버스사고에따른피해자보상적용법률존재라이드셰어링운행단계별TNC보험적용법률존재
	규제흐름	 뉴욕,우버운전자를'자영업자'로판결 캘리포니아,승차공유서비스업체운전기사를 직원으로 처우할 것을 판결했으나 주민투표로 인해 개인사업자유지 	신산업활성화	• 대중교통혁신법에근거한예산지원으로MOD Sandbox Program,IMI시범 프로젝트실행
미국	여객운송(공공)	 여객운송사업의운송자격및요금산정관련법률존재 택시등록기준및규제완화 	반독점	• 반경쟁적행위규제법률존재
	민간모빌리티	• TNC 운행에 따른 안전, 책임의무, 비용 관련 규정사항 존재	개인정보보호	• 소비자개인정보보호및사업자개인정보보호관련의무사항법률존재
	소비자권리	• 대중교통승객이 갖는 권리(뉴욕) 및 버스 승객의 최소 보장수준(뉴저지) 관련 법률 존재	데이터 연계,공유	 공공데이터제공,이용성등을규정한법률존재 대중교통정보표준규격으로GTFS사용
	정책방향	 도시와지방의새로운모빌리티서비스간담회와매칭펀드등의방식실행 MaaS와교통사업자간의데이터연계추진 및스마트모빌리티챌린지추진협의회를설립 >>일본판MaaS를예비시행 	사고,보험,책임	• 일본손해보험회사의 MaaS 보험제공(사고책임, 보험등)
			소비자 권리	• 택시의사전확정운임서비스를통해배차앱으로택시승차전에운임을확정하여 외국인등이택시를안전하게이용할수있음
ОІН	 대중교통,수요대응형지원방안등여객운송관련규정존재 여객운송(공공) 버스,택시,트럭등이여객과화물을 동시에수송할수있도록규제완화 Googlemap을 통해공공교통의정적데이터가표시되도록함 	규제샌드박스	• 「교통사업자협력형자가용유상여객 운송 제도」를창설하여합의형성및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특례조치실시	
일본		• Google map을 통해 공공교통의 정적데이터가 표시되도록 함	반독점	• 버스사업은독점규제에서제외함
	민간모빌리티	• 공공교통사업자를대상으로교통캐시리스 결제와차량단말기, AI를 활용한최적 운행경로의 검색과 같은 AI 온디맨드교통 도입 비용 지원	개인정보보호	• 일본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존재
	보조금지원	• 민간모빌리티서비스이용시 cashless를 지원하는 법률 존재	데이터 연계, 공유	MaaS데이터연계가이드라인존재버스데이터오픈시지원방안관련법률존재

국가	분류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정책방향	 공유경제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EU 전역의 통합된 복합 여행 정보, 예약 및 발권 서비스 관련 프레임워크(+법률) 구축 예정 성공적인 MaaS 서비스 운영을 위해 MaaS Alliance 설립 	반독점	• 반경쟁적행위에대한규제사항을법적으로규정함
EU	규제흐름	• 유럽사법재판소는우버서비스를 '운송서비스'로 평가하고 '운수업체'로 판결	개인정보보호	• 일반정보보호법(GDPR)존재
	소비자권리	• 버스이용시승객이갖는권리에대해법적으로규정함(Regulation(EU)No 181/2011)	데이터 연계, 공유	 실시간교통데이터제공의무및접근성을법적으로규정함 도로안전데이터수집및제공(공유)의무화를법적으로규정함 대중교통데이터표준으로NetTEx와SIRI사용
	정책방향	 MaaS 플랫폼 내 새로운 교통수단과 공유 모델의 등장 및 통합에 따라 해당 영역 내 규제 또는 개발 등을 MaaS를 염두에 두고 수행함 공유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수요 대응형 버스 서비스 확대 	소비자권리	• Regulation (EU) No 181/2011를기본으로 소비자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함
~	규제흐름	• 우버신규면허발급허가(18개월)및우버운전자를근로자로분류함	사고, 보험, 책임	개인용자동차보험유상운송면책조항존재개인용자동차보험자의비영리 목적의카셰어링참여시,보험보상제공
영국	여객운송(공공)	Bus Service Act 2017제정을 통해 버스 서비스 관련 법률제시 비수익노선(비효율)에 대해 미니버스, 자유 승하차 버스, 수요대응 버스 도입	반독점	• 반경쟁적행위제재,기업결합규제사항을법적으로규정함
	민간모빌리티	라이드셰어링서비스의안전관리강화규제법률제시TNC영업의제한적적용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호법및프라이버시전자통신규정존재
	보조금지원	• 비수익노선유지가필요한경우보조금을전제로민간사업자에게운행을위임	데이터 연계,공유	• 교통관련데이터전면 API를실시간으로제공함(요금,운행시간등)
	정책방향	차세대모빌리티사회구현정책의법적틀로서모빌리티지침법제정전국MaaS서비스전개를위해교통기관데이터개방화및상호이용에필요한법적틀구축	사고, 보험, 책임	• 플랫폼 운송기업 종사자(운전자) 보험료 부담 관련 법률 존재
	규제흐름	VCT서비스규제를완화함우버 팝서비스를 금지하였으며 우버 운전자를 직원(종업원)으로 분류함	반독점	• 반경쟁적행위에대한규제사항을법적으로규정함
프랑스	여객운송(공공)	• 대중교통서비스는 공공서비스 위임,자가 운영방식 두 가지로 제공됨	개인정보보호	• 프랑스개인정보보호법존재
	민간모빌리티 소비자권리	 VCT서비스규제사항관련법률존재 공유서비스운영시준수사항및플랫폼노동종사자관련약관을법적으로규정함 교통장애시모든승객이정보를제공받을권리를법적으로규정함 	데이터 연계, 공유	• 교통데이터접근 및재사용,교통데이터제공의무를법적으로규정함
	_	• 티켓의유효기간연장,교환또는환불에대한권리를법적으로규정함		

국가	분류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정책방향	 여객운송법개정을통해앱기반및수요제어식운송을제공하는카풀서비스를조건적으로허용하는등 MaaS를위한제도개선이이루어지지만뚜렷한정책은 없음 Bundled on-demand transport를 만들어 대중교통 범위를 벗어난 풀링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법적 프레임워크생성 	소비자권리	 소비자보호법률개선을통해엄격한제재를규정 금지법과불공정경쟁법도경고및법적조치옵션을제공
			반독점	• 독일의경쟁법은불공정경쟁법과반독점법으로구분됨
독일	여객운송(공공)	 렌터카는의무적으로반납해야하지만반납시회사본사와다른위치를지정할수있음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일반운전면허증 외에추가 승객운송 차량 면허증이 필요 	개인정보보호	•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존재
	민간모빌리티	 카셰어링법을통해무료차량공유서비스에속하는차량의운전자들은우선주차가능 렌터카나우버의경우유휴상태일때운영자의사업장으로돌아가야하고길에서승객을태우는것이 금지되어있음 	신산업활성화	• 수소,클라우드컴퓨팅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과자동차산업에 대한 IPCEI 출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럽 복구 및 복원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자금 조달
	보조금지원	• 교차보조금을통해전기또는수도시설에서발생하는대중교통손실보장	규제샌드박스	• 많은모빌리티관련사업이규제샌드박스제도를활용하여진행
	정책방향	• MaaS,모빌리티분야신산업쪽으로지속적인법제도적지원실행	소비자권리	• 운송서비스제공자는소비자에게서비스면허,주요운행지역등의정보를전자형식 으로제공하는의무존재
	규제흐름	운송서비스법제정을통해택시운송에대한규제완화사용자가한곳에서다양한서비스제공업체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함	반독점	• 개정된 운송서비스법에서계약 수주 절차 및 독점권 부여와 관련된 법률 개정
핀란드	여객운송(공공)	 'Act on transport service' 라는 운송서비스 관련 특별법 존재 택시 규제 완화 및 택시 면허 취득 수정안이 개정됨 	개인정보보호	교통안전을위해사용자개인정보식별불가능핀란드교통통신부,MyData개념관련백서발간
	민간모빌리티	택시차량수제한해제 및최소택시요금철폐를 통해 MaaS 관련앱 더욱 활성화예약앱과 공유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신산업 활성화	• MaaS 관련 신산업활성화지원 관련 법률 존재
	보조금지원	유럽연합법률규정에따른대중교통서비스보조금지급서비스조달및개발목적으로정부로부터대중교통서비스관련예산할당	규제샌드박스	• 운송서비스제공업체가다양한교통수단을이용할수있는단일승차권을판매하는 등규제완화및관련규정개정

국가	분류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호주	정책방향	• MaaS, 모빌리티분야신산업쪽으로지속적인법제도적지원	사고,보험,책임	• P2P법에차량에대한보험가입조항존재
			소비자권리	• P2P서비스이용자에게요금정보를미리제공해야함
	여객운송(공공)	 여객운송법 (Passenger Transport Act)에 의해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등에 대한 법률 존재 버스 안전(Bus services-safety management systems)에 대한 조항 별도로 존재 버스가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존재 	반독점	• 소관부처장관이서비스에대한적정최대요금을제시하여반독점을견제함
	민간모빌리티	• 민간모빌리티에 관한 면허 자격, 안전기준, 요금 등에 대한 법률' Point to Point Transport (Taxis and Hire Vehicle) Act 2016', 'Point to Point Transport (Taxis and Hire Vehicle) Regulation 2017' 존재	개인정보보호	• 일반적인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존재
	보조금지원	• Ride share, Hire cars 등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존 택시 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정책 존재	데이터 연계, 공유	 Data Shaing (Government Sector) Act 2015 존재 Transport Data Exchange (TDX) program 을 통해 대중교통 및 실시간교통 데이터 공유
	정책방향	• MaaS, 모빌리티분야신산업쪽으로 지속적인 법제도적 지원	사고, 보험, 책임	• Street-hail/Ride-hail 서비스 면허제공시, 면허소지자 보험요건에 관한사항을 검토하는 법률 존재 (P2P PAX Transport Industry Act)
	여객운송(공공)	 도로 대중교통수단 관련 법률 'Bus Services Industry Act 2015', 'Rapid Transit System Act' 존재 Public Transport Council Act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대중교통(공공, 민간) 요금 등을 규제관리함 	소비자 보호	P2P서비스이용자에게요금정보를미리제공해야함운임회피및과대청구범죄에대해규제
	민간모빌리티	 서비스자격, 비즈니스운영요구사항등을 명시한민간모빌리티(street hail/ride hail services) 법률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존재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의제2차택시예약서비스제공자법폐지 	반독점	 반독점과관련하여 Ride-hail 서비스 요금체계 규정 조항 존재 P2P 면허소지자는 운전자와의 파트너십계약이 본질적으로 비독점적인지확인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함
			개인정보보호	• 일반적인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존재
	보조금지원	• 버스서비스와기차서비스이용승객들에게대중교통요금지원	데이터 연계, 공유	 개방형데이터및분석이니셔티브에따라, Land Transport DataMall을 통해정적및 동적개방형전송데이터가공유됨 Open Data Portal은 교통을 포함한 9개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수집중이며, 택시, 버스 정보 등 API로 민간회사들도 접근 가능하게 함

국외 법제사례 분석 기반 국내 법제 개선 시사점 도출



MaaS 산업 활성화 측면 <u>해외국가별</u> 법제 시사점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❷ 안전한 TNC 서비스를 위한 법률 존재

• TNC 규정사항 중 <mark>운전자 신원조회과정</mark>은 범죄경력 등의 요소를 검증함으로써 이는 <mark>승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mark>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안전망과 같음

✔ TNC 관련 보험 및 법적 책임 정의

• TNC 보험은 운행 단계를 나누어 유상운송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해당 단계에 따라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보험 요건을 적용함

❷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샌, 재정 투입 근거

• MOD, IMI 등과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마다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MaaS 실현을 이끌어내고 있음



일본 (Japan)



- ♂ 공공교통사업자 대상 혁신서비스 적용시 지원 근거 법률 존재
 - 공공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캐시리스 결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약 1/3을 지원하며 신형수송서비스 AI 온디맨드 교통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정비비용과 차량단말기, 정류장 표식 설치비용등을 지원함





•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준데이터 형식을 통해 데이터를 정비하고 애플리케이션 시양을 표준화 하는 등 MaaS 교통사업자 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해 다양한 노력 시행

MaaS 산업 활성화 측면 <u>해외국가별</u> 법제 시사점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❷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 근거
 - Regulation 181/2011은 버스 승객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보장함으로써 승객의 편리한 버스 이용을 도모함
 - 버스 사고 시 보상(또는 지원) 받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
 - 장애인(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비차별적인 접근권을 제공함

프랑스 (French Republic)

- - 공유서비스 운영 약관(이동성 지향법)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자가 제공해야하는 정보, 공유 교통수단의 수와 특징, 주차 공간 여건, 금지사항 등공유 서비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명시



영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 Transport Act를 통한 대중교통/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근거 법률 제시
 - 버스 프랜차이즈 제도는 대표적인 버스 서비스를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 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버스 서비스를 적용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
 - 고급 발권 제도를 통해 둘 이상의 버스 여행에 대해 서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단일 결제를 시행함
- ❷ 비수익 서비스 대상 혁신서비스 적용 근거 존재
 - 비수익노선에 대해 미니버스, 자유 승하차 버스, 수요 대응 버스 등 특수한 운행 형태를 도입함 >> 비용 절감의 효과와 원활한 수단 간 연계 효과
- ❷ 혁신서비스 안전관리 법안 존재
 -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안전관리 법안을 통해 보안 관리(ex.이용자 정보관리 등) 및 안전관리(ex.내부 안전팀 운영 등)를 강화함



핀란드 (Republic of Finland)

- ☑ 이용자 중심 MaaS 서비스 확산 촉진 근거 제시
 - 여객운송서비스법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자 간의 경쟁 및 데이터 개방성 분야에서 법을 개정하였 으며 MaaS 서비스를 포함한 사용자 지향 모빌리티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함
 - 도시와 지방 도시에 따른 MaaS 서비스 개발 전략 설정
- ❷ 신산업 지원
 - 교통안전국의 이동 서비스 관련 통계정보 제공(공공의 이익이 클 경우),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의 정보 제공 의무화
 - 사업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기능 및 무료 경쟁 촉진



독일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❷ 혁신서비스 이용시 우대에 대한 지원 근거 존재
 - 2017 카셰어링법을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에게 우선 주차권을 제공하며 사업자에게 주차장설치 특별 허가 신청권을 제공함
 - >> 우선 주차의 경우, 정부가 주차장 설치를 꺼려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MaaS 산업 활성화 측면 <u>해외국가별</u> 법제 시사점



싱가포르 (Republic of Singapore)

- ✓ 지점 간 지점 여객운송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MaaS 서비스 확산 촉진 근거 제시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를 제정하고 민간 모빌리티(street hail/ride hail services)에 대해 본격적으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
- - 지점간 여객운송 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스트리트 헤일, 라이드 헤일 또는 카풀 서비스)에 따라 <mark>별도의 라이선스를 부여</mark>하고, 기존 산업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모든 여객운송서비스로 확장
 - LTA(Land Transport Authority)와 PTC(Public Transport Council)는 서비스 이용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감독 강화
- ❷ 플랫폼 운송산업에서의 반독점 규제 및 이용자 보호
 -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
 - 소관부처 장관이 지점간 여객운송 서비스에 대한 적정 최대 요금을 제시하여 민간 운송 서비스에 대한 반독점 견제
 - 지점간 여객운송 서비스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운임은 운임명령에 따라 명시된 최대 운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액요금제를 채택할 경우 사전에 승객에게 요금 고지하도록 하여 승객 보호



호주 (Commonwealth of Australia)

- ✓ 지점 간 지점 여객운송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이용자 중심 MaaS 서비스 확산 촉진 근거 제시
- 기존 운송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교통사업 범주를 신속히 신설하여 신규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
- 승차공유서비스의 범위, 운전자의 자격 요건, 차량의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적시
- ☑ 기존 산업 보호와 신규 산업간 융화를 위한 지원
 - 기존산업(택시업계)과 신규산업(예: 우버 등) 간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상을 도모함
 -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운송사업과 기존 택시산업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 시행(예: 보조금 지급, 택시면허 수수료 감면 등)
- - 우버 운전자에 대한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조조직 및 단체협상권 등과 같은 근무환경 및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 중
 - 서비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승차공유 운전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 고용관리, 고용 규제에 대한 사안 정립 중

MaaS 산업 활성화 측면 <u>법제분야별</u> 법제 시사점

공공 대중교통 중심 여객운수사업 관련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 서로 다른 지역 간 연계를 가능케 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획한 영국 입법례(Bus Services Act 2017)를 참조할 여지가 있음
- 비수익노선과 관련하여 수요에 맞춰 서비스의 다각화를 시도한 영국 입법례(미니버스 , 자유승하차 버스 등)를 참조할 여지가 있음
- 노선 폐지의 경우 일본 입법례(노선 폐지 신고제)를 참조할 여지가 있음
- 교통서비스 공백의 경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을
 통해 보완 가능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세계적으로 택시 산업 규제의 완화 및 지원금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참조할 여지가 있음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 여객운수사업

◆ 국내의 경우 총량 규제를 매개로 플랫폼사업을 허가제로 운용할 것으로 판단됨

(배경) 현재 기존 교통서비스의 공급 포화 상태로 플랫폼사업이 기존 택시 사업과의 충돌로 진입 불가

- 플랫폼사업이 운송사업에 준하는 사업 요건들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 정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기여금을 통한 운송사업과 플랫폼사업 간 협력적 관계로의 완만한 전환유도의 법 정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사업 요건이나 기여금 관련 법 정책의 경우, 국내 법제가 이미
 외국 입법례 상당 부분을 수용한 상황

MaaS 산업 활성화 측면 <u>법제분야별</u> 법제 시사점

보조금 지원

- ◆ 국내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교통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재정지 원이 실행되는 상태
 - 재원 마련과 제공이 해당 지역과 일정한 관련성을 맺어야 책임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재정 한도가 정해져 있어 (타 공공재와의 관련) 방만한 운영 저지 측면에서 독일의 입법례(지역 매칭 펀드 및 교차 보조금)을 참조할 여지가 있음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 권익

◆ 국내법제의 경우 이미 교통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로서 권리를 외국 법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및 보장함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 공유 · 연계

- ◆ 국내법제의 경우 개인 신용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 평가 대응권을 도입함
 - (MaaS 기능을 위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 데이터 보안 공유 연계
 - 교통서비스이용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것(ex. 미국의 GTFS, 유럽 연합의 NetTEx)은 MaaS 효율화를 위해 수용할 필요가 있음

보험 및 법적책임

- ◆ 국내법제의 경우 플랫폼사업 요건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지정함
 - MaaS 사업의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하여 발생 가능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등 MaaS의 편리성에 안심이라는 부가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본의보험(미츠이스미토모해상과 아이오닛세이동화손해보험의 MaaS 보험)은 참조할 여지가 있음

반독점 이슈

• 일본 입법례(버스사업의 사적독점금지법 적용 예외)는 수요가 적더라도 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여전히 필요한 지역에 독점관련법의 위반 없이 MaaS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참조할 여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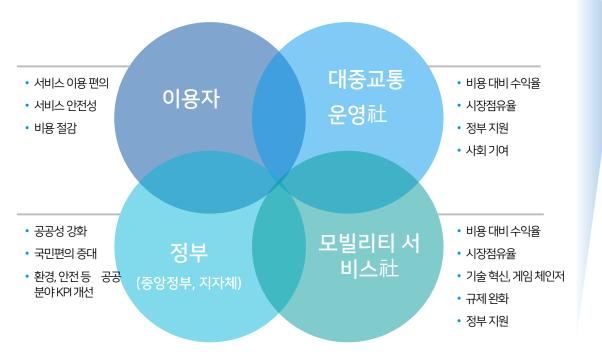
신산업 지원

- → 국내법제의 경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같은 신산업 활성화 법적 여건 존재
 - 신산업 활성화 법적 여건 외에도, MaaS를 겨냥한 실질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MOD, IMI)과 핀란드(Whim) 등의 입법례를 참조할 여지가 있음



결론

- ▶ 정부의 10대 유망 신산업으로서의 MaaS 산업
- ▶ 전 세계적인 MaaS 구현 노력, 하지만 모두가 100% 성공적이지 못함
- MaaS의 성공 조건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MaaS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대심리 충족 및 실질적 이용편익 발생



◆ MaaS 구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거버넌스 모델 존재

- 1) 정부 주도 (대한민국, 일본), 2) 민관협력거버넌스 주도 (핀란드), 3) 민간 주도 (미국)
- 국내의 경우 초기에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되, 효과확산에 따른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에 의한 지자체 확산 노력 필요
- 대부분의 국가에서 MaaS만을 위한 특별법보다는 여객운송/모빌리티 관련 기존 법 개정을 통해 MaaS 서비스를 위한 규제사항 반영 중
 - 프랑스의 이동성지향법, 영국의 Transport Act, 미국 TNC regulation, 싱가폴 지점간 여객운 송사업법 등, 핀란드 여객운송서비스법
- ◆ 다만, 관련 법 개정시 새로운 MaaS/모빌리티 서비스 형태의 출현에 따른 사업 허가, 안전관리 의무, 보험/책임 부분을 새롭게 신설하는 사례 확대
 - 승차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 MaaS, 승차공유 서비스 등 신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지원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규제 완화 사례 확대
 - 미국 대중교통혁신법에 기반한 신산업 대상 연방정부 예산 투입 근거
 - 일본 MaaS 서비스 구축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의 50% 지원 근거
 - 미국과 대한민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 ◆ 신산업과 기존산업에 대한 상생 법제 마련 사례
 - 핀란드에서 우버에 대한 합법화와 함께 택시 대상 승인상한체 철폐 및 요금제한 완화

감사합니다. Thank You, Vielen Dank.

